

광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가단3708(본소), 2017가단3715(반소) 판결

[매매대금 · 청구이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 종결 2017. 6. 9.

판결 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77538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광주지방법원 2006가소277538,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2006.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인 2006. 11. 2.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10. 이 법원에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원고의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원고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채무자에 대한 면책 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2013하단1662, 2013하면1662호로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2. 20.에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4. 1.10.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참조). 그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만을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채권은 1996년 경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소제기는 2006년 경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 사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피고 본인이 아닌 피고의 어머니가 수령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소유의 차량이 원고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되었고, 이러한 가압류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권자의 이름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 이외에도 여러 채권에 의해 가압류가 되었으며, 피고의 차량은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9년 여 전에 이미 폐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면책 신청을 하면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를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소 제기 권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다만 일하던 세차장 사장 부부의 보증을 선 사실만 있다. 또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채권을 알지 못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해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청구이익의 소를 제기한다.

나. 판단

원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